

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1 - 17호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5. .

발 의 자 : 김귀근, 성복임, 장경민,
이건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이우천

1. 제안이유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규정과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근거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23조제3항)
- 나. 급식소 관리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근거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23조제4항)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관리·운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p> <p>①·②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③ (생 략)</p>	<p>제2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관리·운영할 수 있다.</u></p> <p><u>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p><u>⑤ (현행 제3항과 같음)</u></p>